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안)



2019. 9.

송문고등학교
(<http://soongmoon.sen.hs.kr>)



2020학년도 숭문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안)

1 모집 인원 (남 8학급)

모집 구분	모집 전형	모집 정원	비 고
정원 내	일반전형	224명	
	사회통합전형	56명	모집정원의 20%
	소 계(A)	280명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8명	모집정원의 3% 이내
	고입특례대상자전형	5명	모집정원의 2% 이내
	소 계(B)	13명	
총 모집인원(A+B)		293명	

- 1)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2) 사회통합전형은 모집 정원의 20%(56명)를 의무적으로 선발함. (일반전형 선발 시 동시에 선발함.)
- 3)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음.
- 4) 모집정원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수용 계획' 변경 여부에 따라 추후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5)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 중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한 지역(경남, 제주, 세종)의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및 졸업예정자

나.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해당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원 내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구 차상위계층)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의 <표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구 차차상위계층)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의 <표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건강보험료 등 서류를 통해 경제적 형편을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보훈자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 자녀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의 자녀 	
정원 외	보훈자 자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고입특례대상자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기회균등전형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됨. 동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회다양성 전형의 한부모 가정(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자녀와는 구분

나. 기회균등전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1)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참고자료 1** 참조
- 2)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부·모 모두의 재산(전국 소재) 및 소득 내역 자료 등 추가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예정

다. 학교장 추천대상자 추천 요건

-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라. **보훈자 자녀**의 조건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안내 사항

1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자 교육비지원 관련 안내
2020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0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2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변경 예정 사항 안내
2021학년도 고입 전형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 지원자는 다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지원확인서 ※ 위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사항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1)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입금(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 건강보험료 납입금(본인부담금)과 재산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 구분	월 소득 환산액	건강보험 납입금			재산세 납입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추정금액 60%)	재산세 납입금(연간)
8분위	6,601,411원	206,709원	221,052원	210,566원	660,141,100원	396,084,660원	954,330원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한 경우에도 부모 모두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참고자료 2**, **참고자료 3** 참고)

나. 다문화가정

- 1)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수급권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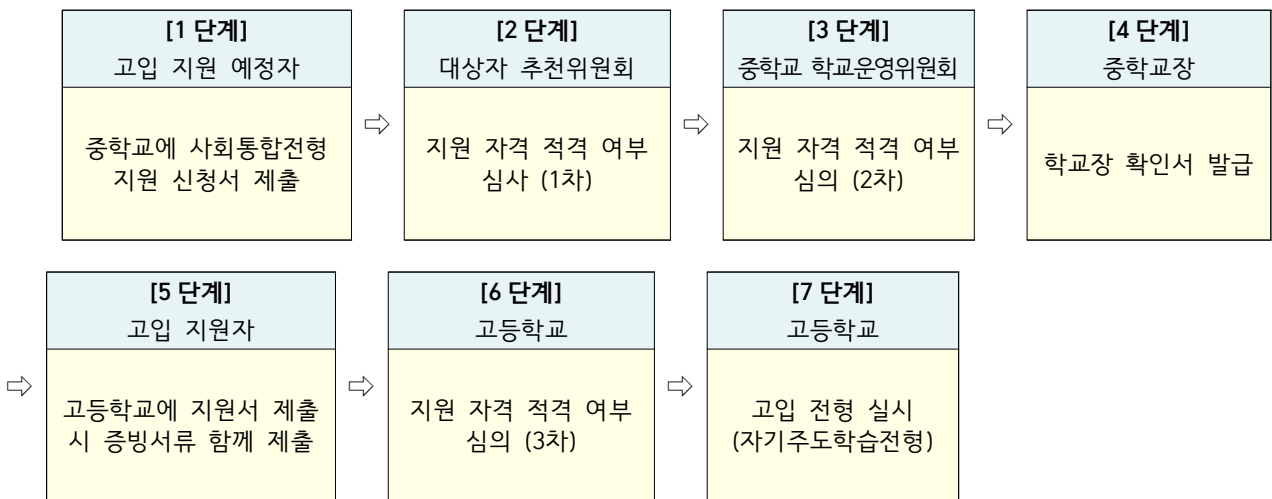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으로 '장애인 1급~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19.7.1.부터 용어 변경

마.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4.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함.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보호자 자녀는 증명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단계] 심의 제외 가능

※ 중학교에서 위 [4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가. 제출 시기 : 2019.12. 9.(월) ~ 12.11.(수) (업무시간 09:00~17:00)

나. 제출 서류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장 확인(직인 날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7) ○ 입학원서(서류) 접수증 1부(붙임6)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1부					
일반전형		○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					
사회 통합 전형	사회통합 전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2) ○ 2020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3)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자활 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차상위장애 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장애 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 <p>구청, 동주민센터</p>
		학교장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해당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 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 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 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함. 	
		보훈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관할 보훈지청) 1부 	
사회 통합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공통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1순위	다문화가정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특수교육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 (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 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장애인의 자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등급 1~3등급)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환경미화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지방소방위 이하)			
보훈자자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2) ○ 2020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3)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보훈지청) 1부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2) ○ 2020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3)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다. 추가 모집 시

- 입학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각종 증빙 서류 등 모든 제출 서류
- ※ 추가 모집 시에는 모든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가.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온라인 입력 시험 운영		2019.12.4.(수).09:00 ~ 12.8.(일) 24: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 원서를 입력하여 저장 가능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 (전형료 온라인 결제)		2019.12.9.(월) 00:00 ~ 12.11.(수) 15: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 전형료 7,000원 결제 (인터넷 원서 접수료 별도) ○ 이 기간에 전형료를 결제해야 원서 접수로 간주함.
서류 제출 (지원자 전원)		2019.12.9.(월) ~ 12.11.(수)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 본교 방문 제출 ○ 입학원서, 각종 확인서 등에 학교장 직인을 날인 후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 자료 제출
공개 추첨		2019.12.13.(금) 14:00	추후 안내	
추첨 결과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2019.12.13.(금) 17:00	본교 홈페이지	
추가모집	원서 접수	2020.01.15.(수) ~ 01.16.(목) (업무시간 09:00 ~ 17:00)	본교	
	추첨 및 합격자 발표	2020.01.20.(월)	본교 (홈페이지)	
입학 신고 및 예비 소집		추후 공지	본교	
등록금 납부 기간		2020.01.22.(수) ~ 01.28.(화)		

※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접수 방법 및 절차

[모든 지원자]

- 본교 홈페이지 접속
- 팝업창 또는 입학 안내에 링크된 '원서 접수 바로가기' 클릭
- 원서 접수 사이트 회원 가입 (지원자 본인 명의로 가입)
- 입학원서 예비 입력 및 저장 시작 (2019.12.4.(수) 09:00~)
- 입학원서 입력 및 전형료 결제 (2019.12.9.(월) 00:00 ~ 2019.12.11.(수) 15:00)
- 입학원서, 각종서식 등 출력물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직인 받음
- 입학원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타 유형별 제출 서류를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 (2019.12.9.(월)~2019.12.11.(수) / 09:00~17:00)
- 추첨 및 추첨 결과 확인 (2019.12.13.(금) 본교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므로 실제 입학원서 교부 절차는 없음.

※ 지정된 서류 제출 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원서 접수 전에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특히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온라인 접수 후 또는 서류 제출 후에도 불합격 처리함.

2)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전형료 결제

- 기간 : 2019.12.9.(월) 00:00 ~ 12.11.(수) 15:00
- 전형료 : 입학원서 입력 시 전형료 7,000원을 온라인 결제하여야 함. (인터넷 원서 접수료 별도)

※ 온라인 접수 및 전형료 결제가 끝나고 접수번호가 생성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됨.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3) 서류 제출

- 기간 : 2019.12.9.(월) ~ 12.11.(수) (업무시간 09:00~17:00)
 - 제출 서류 : 원서 출력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형별 구비 서류
 - 제출 장소 : 본교 입학접수처 (본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한 지원자는 원서 출력물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형별 구비 서류 등을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4) 추첨

- 일시 : 2019.12.13.(금) 14:00
- 전형별 모집 인원 대비 입학 지원율이 100% 미만일 경우 지원자 전원 예비 합격 (서류상 하자 있을 시에는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 또는 추첨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 자사고 연합 공개 추첨 또는 학교 자체 추첨 여부는 추후 결정하여 공지함.

5) 최종 합격자 발표

- 일시 : 2019.12.13.(금) 17:00
- 이종 지원이 있을 경우 모든 전형에서 해당 예비 합격자의 합격은 취소됨.
- 일반 전형 이외 전형 예비 합격자는 해당 자격 증빙 서류의 확인 후 합격이 결정됨.

5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가. 전형 절차

중학교 성적 제한 없이 각 전형별 추첨 선발

나. 지원율에 따른 추첨 여부

- 지원율이 전형별 모집 인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추첨 없이 해당 전형 지원자 전원 합격 (지원자 중 서류 미비로 불합격되는 인원 제외)
- 지원율이 전형별 모집 인원 기준 100%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발 (자사고 공동 추첨 또는 학교 자체 추첨 여부는 추후 결정)

6 전형 유형별 선발 방법

가. 일반전형, 보훈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본교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추첨으로 선발

나. 사회통합전형

- 1)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에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유형은 지원 자격 참조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일반전형이 지원을 미달로 자동합격임에도 사회통합전형이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발함.

2)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3) 다자녀(3인 이상)가정 자녀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30%(16명) 이내로 함.

7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한다.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전기고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등 이중으로 지원하는 자

8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 2019.12.13.(금) 17:00 / 본교 홈페이지

나. 합격자 예비소집 : 추후 안내

다.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 : 2020.1.22.(수) ~ 1.28.(화)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가. 지원 근거 :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참여협력담당관-17997, 2019.2.25.)

*교육비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수익자부담경비 등

나.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 학년도 말까지

○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 사회통합전형 입학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다.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은 학기 중 법정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학년도말까지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에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일반전형, 사회다양성전형, 정원외 전형)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일반 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지원, 일반 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
- 학교운영지원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교육청에서 일반학교 수준까지 지원(차액 본인부담)
-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자에 한하여 급식비 학교장 추천 지원 있을 수 있음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 교복비, 졸업앨범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사업별 지원계획에 의해 교육청에서 지원

❖ 교육비 지원 유의 사항

1. 2020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20년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함

※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2.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가.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불가함

나.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기회균등전형입학자와 지원방법(금액)이 상이함.

❖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 교육비 지원 사항

○ 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 법정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지원기준	학비		수익자 부담경비 (소규모테마형교육여 행비, 수련활동비 등)	비고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	○	○	
기회균등 전형 입학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	-	
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 입학 (중위소득 60%이하 학생)	일반고수준만 지원	-	-	일반고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	

○ 학교운영지원비 : 최대 96,800원까지 지원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항목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 일반학교와 동일
- ▶ 교 복 비 : 300,000원 이내, 신입생(1학년)
- ▶ 앨 범 비 : 45,000원 이내, 예비 졸업생(3학년)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일반 학교와 지원 기준 동일

라.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내 용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체험 ○ 나눔(봉사) 힐링 캠프
학력 신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 ○ 명문대학생과 함께하는 1대1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 송문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지원 ○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 '역지사지' 프로그램 지원
진로 및 진학지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도
생활 지원 및 비교과 활동비 지원(본교의 지원 계획에 따른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수강료 ○ 중·석식비 ○ 수학여행비, 수련회비, 교복비, 앨범비, 교과서 및 교재비

※ 상기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장학금 지원

- 입학성적 우수자 이외에도 입학 후 성적 우수자 및 모범학생 등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단,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은 최초합격자를 우선 선발함.)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본교 장학생 장학규정에 따름.

구 분	내 용
교내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우수 및 모범학생 장학금 - 성적우수자 장학생(매년 2회), 송문꿈장학금 ○ 송문가족 장학금(형제 및 동문자녀) ○ 수호천사 장학금 ○ 송문GLP 장학금(Global Leadership Program : 해외연수) 등
교외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구 장학금, 하이 서울 장학금, 세호재단 장학금을 포함하여 30여 종류
사회통합전형 특별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본교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기말 학업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함.

10 기타 유의 사항

가. 2020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 시행 2018.01.04.) 제2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신입생 입학 원서 접수 1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나. 이종 지원 금지

- 전기고 및 후기고 합격자(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본교에 지원 할 수 없음.

- 이중지원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 다. 지원자는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라. 모든 유형의 전형에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천 선발 이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 마.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 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바.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 사. 지원자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하여야 함.
- 아.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됨. 원서 접수 시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자.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 7,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차.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및 교무부에 문의바람.

< 송문고 입학관련 문의 >
(우)041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송문길 99
 홈페이지 : <http://soongmoon.sen.hs.kr/>
대표전화 ☎ 02)716-2980~1 교무부 ☎ 02)716-2982 FAX 02)711-4471

**참고 자료 1****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근거**

- 2019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1733, 2018.3.26.)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으로 2019학년도 '건강보험료 관정기준'을 2020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사용
- 소득분위별 재산세 연세액 산출 자료 제공(서울특별시 세무과-10063, 2019.5.3.)

【표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표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기회균등전형 지원 자격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
 - '직장가입자' 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재산세 납입금을 추가로 확인 ☞ 18쪽 【참고자료 3】 참고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이혼한 경우에도 동일)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 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6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추가 재산세 납입금 확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근거

- 교육부-시도교육청 고입업무 협의체 협의회 결과 알림(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3634, 2019.4.27)
- 소득 분위별 재산세 연세액 산출 자료 제공(서울특별시 세무과-10063, 2019.5.3.)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단위 : 원)

분위 구분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1,296,676	-	-	-
2분위	2,140,180	60,531	22,221	61,196
3분위	2,785,595	89,106	66,766	89,960
4분위	3,411,996	109,823	99,177	111,062
5분위	4,053,168	129,509	126,148	131,194
6분위	4,741,318	152,556	153,801	154,873
7분위	5,527,505	176,306	183,030	179,128
8분위	6,601,411	206,709	221,052	210,566
9분위	8,405,530	274,122	299,062	284,899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기구 비율”/ 전국2인이상 비농가, 2018년 1분기~4분기 기준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단위 : 원)

분위 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296,676	129,667,600	77,800,560	86,700
2분위	2,140,180	214,018,000	128,410,800	162,610
3분위	2,785,595	278,559,500	167,135,700	237,830
4분위	3,411,996	341,199,600	204,719,760	331,790
5분위	4,053,168	405,316,800	243,190,080	427,970
6분위	4,741,318	474,131,800	284,479,080	531,190
7분위	5,527,505	552,750,500	331,650,300	696,600
8분위	6,601,411	660,141,100	396,084,660	954,330
9분위	8,405,530	840,553,000	504,331,800	1,387,320

* 재산의 1%를 월 소득으로 계산한 교육부 학교정책과(2013.04.19.)에 근거

** 위의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금액은 재산가액의 6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전부 제출하도록 할 것

참고 자료 4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적용 기준)

■ 근거

- 교육부-시도교육청 고입업무 협의체 협의회 결과 알림(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3634, 2019.4.27.)
- 소득 분위별 재산세 연세액 산출 자료 제공(서울특별시 세무과-10063, 2019.5.3.)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18쪽 【참고자료 3】 참고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 ‘직장 가입자’ 및 ‘혼합’ 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7분위	5,527,505	176,306	183,030	179,128
8분위	6,601,411	206,709	221,052	210,566
9분위	8,405,530	274,122	299,062	284,899

【소득 8분위 재산세 납입금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7분위	5,527,505	552,750,500	331,650,300	696,600
8분위	6,601,411	660,141,100	396,084,660	954,330
9분위	8,405,530	840,553,000	504,331,800	1,387,320

구분	순위	지정 대상자	비고
기회균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의 <표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의 <표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보훈자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단,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서울미술고는 정원 외(2~3%이내)로 선발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 자녀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의 자녀 ○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보훈자 자녀전형 (정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학비 면제 대상

※ 사회다양성전형은 8분위 이하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기 회 관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학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 정 차 상 위 대 상 자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 소득50% 이하 · 기준중위 소득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 교 장 추 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곳	
보훈자 자녀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사회다양성전형	공통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1순위	다문화가정의 자녀	○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해당서류 발급기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탈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 통지서 등)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해당서류 발급기관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환경미화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 (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지방소방위 이하)			
정원외	보훈자 자녀 전형	국가 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붙임2]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발급 번호 2019 -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중학교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지역 ()년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정원 내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소득분위 ()		
			2순위	유형 (), 소득분위 ()		
정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호 ()목 대상자		
<p>위 학생을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보훈자 자녀, 특례대상자) 전형 대상자로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중학교장 (직인)</p>						
승문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확인자는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에 '○'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붙임4]

2020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 번호 2019 -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 중학교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학교장 추천 요건만 기재할 것, 3쪽 참조)					
2019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송문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추천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중학교에서 ‘2020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유형, 증빙서류, 추천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추천 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에 한해 추천서 발급
(지원 고등학교에 ‘학교장 확인서’와 ‘학교장 추천서’, 증빙 자료 모두 제출)

[붙임6]

입학원서 (지원 서류) 접수증	
접수번호	
성 명	
<p>2020학년도 송문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p> <p>2019년 12월 일</p> <p>송문고등학교장</p>	

절취선

지원 서류 접수 현황 (학교 보관용)	
접수번호	
성 명	
출신중학교	
전형 구분	
사회통합 유형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보호자 휴대전화
	출신중학교
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원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4. 5. 6. 7. 8. 9. 10. 	
<p>※ 3. ~ 10.에는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직접 기재하세요.</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및 본교의 입학 전형 실시 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지원자 및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 계좌번호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 접수,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 확인, 성적 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 자료 산출, 전형료 반환 등 입학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조회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 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 . .

지원자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승문고등학교장 귀하